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66
----------	-------

발의연월일 : 2025. 6. 16.

발 의 자 : 박충권 · 김성원 · 김태호
박준태 · 우재준 · 신성범
이인선 · 박성훈 · 백종현
조지연 · 조은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평화통일 지향 등 기본원칙에 입각한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 기본사항의 경우 위와 같이 통일부장관에게 포괄 위임하고 있어 해당 사항이 통일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제고 등 기본원칙 실현을 위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초 · 중등학교의 교사 및 시 · 도 교육청의 공무원의 경우 학교 통일교육의 주축이라는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공공분야 대상 통일교육의 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초 · 중등학교의 경우 해

당 교육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시·도 교육청의 경우 실시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기본사항에 대해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통일교육의 실시의무 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도 교육청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본원칙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실현하는 한편, 학교부문의 통일교육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및 제6조의7제1항 등).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2. 북한의 현황과 인권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4. 통일의 환경과 정책
5. 통일의 비전과 과제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7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

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① (생 략) <u><신 설></u>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① (현행과 같음) <u>②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u> <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u> <u>합되어야 한다.</u> 1. <u>통일의 의미와 필요성</u> 2. <u>북한의 현황과 인권</u> 3. <u>「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u> <u>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u> <u>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u> <u>에 대한 이해</u> 4. <u>통일의 환경과 정책</u> 5. <u>통일의 비전과 과제</u> 6. <u>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u> <u>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생 략)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 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 의 장, <u>지방자치단체의 장 및</u>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u> <u>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u> <u>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u> <u>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u>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 교육의 실시) ① ----- ----- <u>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u> <u>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u> <u>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u> <u>·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u> <u>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u>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 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u>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직원-----.</u> ② · ③ (현행과 같음)
---	---